



보도 일시	2022. 11. 28.(월) 12:00 (화요일 조간)	배포 일시	2022. 11. 25.(금)
담당 부서 <총괄>	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	책임자	과 장 서영태 (044-201-7340)
		담당자	주무관 민강원 (044-201-7350)

자원순환분야 규제, 현장 적용성 높인다

-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,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, 11월 29일 개정시행 -

-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석유화학제품 원료 제조,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수집·운반 체계 개선, 건설폐기물 불연물 위탁 및 반입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‘폐기물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’ 및 ‘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’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폐기물 발생·처리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 부담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먼저,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납사,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되어,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.
- 그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 제조로만 규정되어 보일러 보조연료에 국한하여 사용되었으나, 앞으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.
- 또한, 기존에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하여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·검사 기준을 마련했다.

- 아울러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%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을 구체화했다.
- 앞으로 복합재질, 이물질 등의 혼입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하게 되면 소각·매립이 줄어들고 탄소중립*과 순환경제 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.

* 플라스틱 1톤 생산시 이산화탄소(CO2) 배출량 85% 이상 감축 효과(원유 기반 2.3톤 vs 폐플라스틱 재활용 0.3톤)(Agora, 독일 소재 민간 연구기관)

-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는 그간 사료 및 비료 제조 등으로 재활용 용도가 제한되었으나, 현장의 활용 여건과 환경영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지제품 제조 및 화력·열병합 발전소 연료 등으로 재활용 유형이 대폭 늘어났으며, 사료로 활용되는 쌀겨는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활용성이 높은 폐기물의 규제를 완화했다.
- 12월 2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, 일회용 컵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집·운반 및 처리체계를 개선했다.
 - 일회용 컵 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집·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,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으로 완화하여 지자체와 대행계약 없이 일회용 컵을 수집·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.
 - 또한, 일회용 컵 수집·운반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일회용 컵을 수집·운반할 수 있고, 수집·운반 차량 기준도 특장차량(압축·암롤)이 아닌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도 수집·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.
- 아울러, 소각시설의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는 불연물 무게 기준을 10% 이내로 하여 소각업체에 위탁·처리하도록 개선했다.

-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“2050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사회 전환이라는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자원순환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”라며,
- “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 개정 주요내용. 끝.

담당 부서 <총괄>	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	책임자	과 장	서영태 (044-201-7340)
		담당자	주무관	민강원 (044-201-7350)
<건설폐기 물 처리>	환경부 폐자원관리과	책임자	과 장	이정미 (044-201-73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지수 (044-201-7363)
< 폐기물 재 활용>	환경부 자원재활용과	책임자	과 장	마재정 (044-201-7380)
		담당자	사무관	민영우 (044-201-7393)
<폐플라스틱 열분해>	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	책임자	과 장	이주창 (044-201-7400)
		담당자	사무관	허지영 (044-201-7401)
<1회용품 수집·운반>	환경부 1회용품 대책 추진단	책임자	팀 장	김남희 (044-201-7417)
		담당자	사무관	송관성 (044-201-7352)

①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 기준 마련 등

※ 안 시행령 [별표 3], 시행규칙 제38·41조, [별표 9·10·11]

- (시설 분류)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 시설을 재활용 시설로 별도 분류
 - * (소각) 열분해 시설 → (소각) 열분해 소각시설, (재활용) 열분해 시설
- (시설 기준) 열분해 시설의 설치·관리 기준, 사용신고 및 검사기준 마련

② 폐기물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(유형 및 기준 신설)

※ 안 시행규칙 [별표 4·4의2·4의3·5의3]

- (폐합성수지, 영농폐비닐)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 원료 제조로 재활용 허용 및 세부 재활용 기준* 마련 등
 - * (남은 탄소) 0.15 퍼센트 이하(무게), 수분 및 침전물 : 0.5 퍼센트 이하(부피) 등
 - ※ 폐합성수지류를 식품 용기 원료로 활용 시 보관선별 별도 시설 구축 및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생원료 품질기준 준수 등
- (커피찌꺼기^①, 버섯폐배지^②) 축사갈래 및 요업제품^①, 유지제품^{①②}, 화력 및 열병합발전소의 연료^{①②} 등으로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

③ 보증금제 대상 1회용 컵 수집·운반 체계 개선

※ 안 시행규칙 제9·15의2·66조, [별표 5]

- (인·허가)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필요 → 폐기물 처리신고 대상 완화
- (보관)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로 운반 허용
- (적재 차량) 밀폐형 압축·압착 또는 암롤 차량 →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

④ 폐기물 선별시설 설치·관리기준 강화 ※ 안 시행규칙 [별표 9·11]

- (설치기준) 세척수 유출방지 배수로·집수장치 및 바닥면·벽면·지붕 갖춘 보관시설 설치^①, 주거지역 인접 시(1km 이내) 지하화 및 광학선별기 설치^②
- (관리기준) 실내 작업장 청소 및 청소 실적 작성·보관^③

※ ①, ③ : 2024.12.31. 시행 ② : 2025.12.31. 시행

⑤ 건설폐기물 불연물 위탁 및 반입기준 마련

※ 안 시행규칙 [별표 8],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[별표 1의2]

-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탁 및 소각 처리 시, 불연물 함유량 기준 준수 의무화(무게기준 10 퍼센트 이내)

⑥ 폐기물 규제 완화 등 기타 개선 사항

※ 안 시행규칙 제17의2·18·20·37조, [별표 4·5·5의3·6·8],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[별표 2의3]

- (배출자 변경신고 간소화) 상호·소재지 및 처리계획 변경 등 폐기물 변경이 없는 경우 지정폐기물 해당여부 확인 의무 제외
- (왕겨 및 쌀겨)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인계·인수 입력 의무를 면제하고 사료용 쌀겨는 폐기물 제외
- (재활용환경성평가 활성화) 재활용환경성 평가 신청을 위한 연구·실험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·신고 대상에서 제외
- (중간 가공폐기물 수집·운반) 차량 명의(본인→본인 또는 타인) 및 수집·운반증 발급(전용차량→전용 및 임시차량) 기준 완화
- (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)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출입하는 수집·운반차량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점(진입로 및 계량시설) 통과 의무화